

한국보호관찰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년 공동학술대회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 방식 : 영상회의 플랫폼 활용 온라인 회의
- 주최 : (사)한국보호관찰학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보호관찰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회 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진 행
등록	13:30~ 14:00	사전등록회원 온라인 접속	
총회	14:00~14:10	개회사 및 축사	
개회	14:10~14:30	정기총회	

대주제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전체사회) 박미랑 교수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	--

1주제 14:30 ~ 15:50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사회자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법학과)
	발표자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주제 16:10 ~ 17:30	토론자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강신원 교수(법무연수원)
	영미의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 경향과 시사점	
	사회자	정희철 교수(대구가톨릭대 법학과)
	발표자	이유경 박사(명지대 객원교수)
	토론자	유영재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민덕희 교수(법무연수원)



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익숙했던 우리는 얼마전 시행된 ‘위드코로나’로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전자발찌훼손·살인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으로 중범죄자관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정책적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거셉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중범죄자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중범죄자 시설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1주제)’, ‘중범죄자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2주제)’에 대해학계와 실무 현장의 토론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원 혜 옥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입니다.

2021년 오늘, 한국보호관찰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한국보호관찰학회 원혜욱 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논의가 실천적일 수 있도록 함께 자리를 마련해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윤웅장 국장님과 법무부 보호관찰과 실무자분들의 노고에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준 여러분들과,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력범죄의 발생과 그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은 오늘날 선진화된 교정체계와 구체적인 실무 그리고 치열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오늘 우리가 ‘중범죄자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중범죄자 사회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천착하는 일은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자 앞으로 우리 교정체계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전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책기관으로써 교정 영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칭변경을 통해 법무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은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 태 훈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입니다.

존경하는 원혜옥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학회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의 도약을 이끌고 있는 하태훈 원장님, 오랜 시간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로 뒷받침을 해 주는 연구원님들과 함께 학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울러 관심과 애정으로 학회 운영에 힘을 보태주시는 여러 이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혜옥 회장님께서서는 제12대 한국보호관찰학회장으로 선출되셔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지난 2년간, 학술지 KCI 등재 자격 유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원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학회의 저변 확대 및 내실화에 힘써 주셨습니다. 회장님의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장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금년 7월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인 강윤성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재범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범죄자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신속수사팀을 개설하여 중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여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 기관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보는 추계학술대회의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개입은 교도소에 입소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의 개입으로만 끝나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출소 후에도 연계된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추계학술대회에서 중범죄자의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 실무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들이 제안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오늘 추계학술대회에서 중범죄자의 보호관찰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되고 제안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온라인으로 접속 중인 학회원 및 참석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 응 장



목 차

[제1주제]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김대근 1

[제2주제]

영미의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 경향과 시사점 이유경 25



제1주제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김대근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목 차]

I. 서설 - 왜 중범죄자인가?

II. 중범죄자의 기준과 범위

1. 중범죄자 기준 일반: 형기별 수형자 구성과 중(重)범죄자 결정기준
2. 교정시설 내 처우기준으로서 중범죄자
 - 가. 시설 내 처우의 원칙
 - 나. 개별 법령에 따른 중범죄자 기준
 - 다. 각국 모델과의 비교
 - 1) 「형집행법」의 기준
 - 2) 법무부 훈령의 기준

III.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

1.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현상 일반
 - 가. 장기수용자에 대한 처우
 - 나.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계
 - 1)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실태
 - 2) 중(重)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부재
 - 다. 경비처우의 실효성 문제와 개별처우의 원칙
2. 중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 가. 중범죄자의 구분의 통일된 기준 부재.
 - 나. 중범죄자의 시설 수용 상의 문제
 - 1) 독거수용실 부족
 - 2)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발생
 - 3)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의 곤란
 - 다. 교정·교화, 작업 프로그램의 부재

- 1) 프로그램 부재 일반
- 2) 중범죄 여자수형자의 처우
- 라. 범죄예방 및 위험성 평가활용의 한계
 - 1) 석방 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부족
 - 2)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미흡

IV.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과제와 대안

- 1. 중범죄자 구분의 통합적 기준제시
- 2. 중범죄자의 수용 시설 개선
 - 가. 독거수용실 및 전담교정시설 확충
 - 나.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방지대책 마련
 - 다. 전담 처우 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 3. 중범죄자를 교정·교화하고 치료할 프로그램 개발
- 4.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의 적극 활용
 - 가. 출소 후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 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출소 후 관리방안 마련

I. 서설 - 왜 중범죄자인가?

중(重)범죄자는 장기형에 따른 사회와의 단절된 기간이 길고, 인성 등 성격적 결함, 가족관계의 해체, 사회적 비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범죄자의 사회복귀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범죄자에 대한 법적 정의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악한 습성의 폭행죄나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나 마약범죄, 공공기물에 대한 반달리즘 등이 중범죄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양한 범죄로 인해 장기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서 형집행 중인 수형자의 수는 상당하며, 장기형 수형자를 모두 중범죄자로 분류하고 그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적합한 처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특히 교정시설 안에서의 중범죄자의 분류는 단순히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처우의 곤란함이나 개선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아직까지 중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중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역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도 연결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교정시설 내 중범죄자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과 처우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중범죄자의 기준과 범위

1. 중범죄자 기준 일반: 형기별 수형자 구성과 중(重)범죄자 결정기준

양형기준에는 중대(重大)범죄 결함 살인 범행으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을 적시하고 있다.¹⁾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은 2021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범죄 수사 기관이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말한다.²⁾ 여기서 의미하는 중대범죄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교정실무에서는 장기수형자를 형기 10년 이상인 수형자와 무기수형자를 의미하고 있다.³⁾

1) 양형위원회, 『2021 양형기준』, 2021, 4쪽

2)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9일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도 전체 수형자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2,784명(8.0%), 20년 이상 719명(2.1%), 무기수형자 1,320명(3.8%), 사형확정자 56명(0.2%)이다.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4,879명(사형확정자 포함)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형기를 기준으로 중범죄자를 분류할 경우 10년 이상 형기를 받은 수형자의 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 내에서 중범죄자에 적합한 처우나 교화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를 기준으로 중범죄자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강도살인, 강간 등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과 관련한 범죄유형을 중범죄자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구분	징역							무기	사형
	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2011	29,831	5,421	9,666	6,610	4,335	3,344	455	1,264	58
2012	30,324	5,322	9,829	6,493	4,601	3,317	462	1,268	58
2013	30,738	5,078	10,344	6,613	4,912	3,299	492	1,288	58
2014	32,006	5,312	10,898	6,866	5,088	3,335	507	1,320	58
2015	33,637	5,724	12,001	6,870	5,216	3,283	543	1,337	57
2016	34,991	6,362	13,010	6,747	5,195	3,127	550	1,345	57
2017	34,679	6,050	13,208	6,727	5,029	3,071	594	1,358	57
2018	33,790	6,173	12,587	6,587	4,888	2,927	628	1,343	57
2019	33,232	5,599	12,819	6,340	4,902	2,903	669	1,343	56
2020	33,287	4,401	14,053	6,428	4,902	2,784	719	1,320	56

※ 2021 교정통계연보 67쪽

2. 교정시설 내 처우기준으로서 중범죄자

가. 시설 내 처우의 원칙

중범죄자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으나 교정의 목적은 수형자가 석방 후 주체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하고자 함에 있고 이는 장기수형자에 대해 특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교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 즉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형자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그 특성에 따라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고, 둘째로 개별적 수형자에게 가장 타당한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넓혀 수형자의 분류에 따른 교정처우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⁴⁾ 이러한 이념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

3) 교정본부, 『교정실무』 2020, 98쪽

칙에서도 선언하고 있는 바, 예컨대 1955년 유엔의「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 66조, 69조에서는 처우목적설정을 위해서 ‘처우의 개별화’가 필요하고 수형자 개인의 성격 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개별처우계획’에 근거해야하며 각자의 필요성에 따른 치료적·교육적 그 밖에 모든 유효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여야 함을 선언한 바 있고⁵⁾, 1973년「유럽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60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에서도 철저한 처우의 개별화를 강조하였다⁶⁾. 특히 장기수형자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형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증가하고, 수용생활의 단조로움과 긴장감이 이완되어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처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장기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 개별 법령에 따른 중범죄자 기준

교정 관점에서 중범죄자에 대한 분류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양형기준에 적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의 실무는 현행 분류체계는 위험성의 판단에 따라 도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수형자를 분류하고 있으나, 보안상 경비처우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고 개별 처우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정 실무에서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장기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와 교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 이념은 개인의 특성과 욕구, 위험성의 진전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해야 하는 바⁷⁾, 이를 바탕으로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행 교정시설 내 처우 기준에 있어 중범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및 법무부 훈령으로 유사개념들이 정의되어 있으며 「분류처우 업무지침」, 「분류센터 운영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나타나 있다.

1) 「형집행법」의 기준

현행 「형집행법」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개별처우 계획에 따라 재소자의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게 하고자 분류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소자의 성별이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질환자 등의 최저기준만이 분류기준이 되었던 시기를 지나,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관계, 재소자가 수행하는 작업, 교육, 질환, 위험성 정도 등의 다차원적 기준에 따라 수감자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야한다는 교정이념을 실현하고자 함이다.⁸⁾ 현행 「형집행법」 제55조⁹⁾에서도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4) 강영철, “수형자의 개별처우와 교정시설 및 처우의 다양화”, 「한국교정학회소식」 제43권 제43호, 한국교정학회, 2009, 40-41쪽.

5) 금용명,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169쪽.

6) 금용명, 같은 논문, 172쪽.

7)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쪽.

8)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2쪽.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¹⁰⁾에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다양화된 처우가 진정한 교정이념의 실현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현행 제도는 수형자를 여러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우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¹¹⁾(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경비처우급¹²⁾(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개별처우급¹³⁾(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수용급은 개정전 수용급을, 개별처우급은 개정전의 중점급과 동일하나, 2010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경비급과 처우급의 결합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처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2010년 개정의 목표라 할 수 있었다. 즉 2010년 개정된 「형집행법」의 근본 취지는 경비등급에 따른 수용과 경비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처우를 이루고자 함이었으며¹⁴⁾ 이에 따라 수형자의 수용은 경비처우등급에 따라 이루어졌다.¹⁵⁾

요컨대 수용자 처우와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수형자를 경비처우등급별로 구분하고 그 기준을 「형집행법」 제57조¹⁶⁾ 및 「시행규칙」 제74조¹⁷⁾에 마련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통해 대부분 중범죄자의 경우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로 분류하고 중경비시

9) 「형집행법」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10) 「형집행법」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기본수용급은 수형자가 판결이 확정되어 기결 신분이 되면 분류심사에서 첫 번째로 결정되는 처우 등급이다. 전체 아홉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실무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부호를 붙이고 있다. 여성수형자(W급), 외국인수형자(F급), 금고형수형자(I급),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J급), 23세미만 청년수형자(Y급),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L급),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M급),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P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0쪽 참조.

12) 경비처우급은 경비처우의 필요정도에 따라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인 S1급(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인 S2(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인 S3급(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S4(중경비처우급)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1쪽 참조.

13) 개별처우급은 교정시설내에서 수형자 개개인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되는 처우등급으로 직업훈련(V급), 학과교육(E급), 생활지도(G급), 작업지도(R급), 운영지원작업(N급), 의료처우(T급), 자치처우(H급), 개방처우(O급), 집중처우(C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1쪽 참조.

14)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5쪽.

15)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4쪽.

16) 「형집행법」 제57조(처우)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17)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경비처우급) 4. 중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설¹⁸⁾에서 처우하게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94조에는 조직, 마약, 관심대상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① 「형집행법」 제57조 기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형집행법」과 현행 교정실무에서는 중(重)경비처우급(S4급)과 중(重)경비시설이라고 하는 분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비처우급은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도주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 수용생활의 순응정도, 교정성적의 양호에 따라 결정되는 처우등급으로 수형자의 위험성 등을 진단하여 단계적으로 처우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자 한다.¹⁹⁾ 그 중에서도 중경비처우급이란 경비처우급의 하나로서 상습규율위반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의미한다. 분류심사거부자는 중경비처우급에 편입하고, 징벌 또는 조사로 인하여 분류심사가 2회 이상 유예된 경우와 미결수용을 포함하여 금치의 징벌처분을 3회 의결한 이후부터는 분류심사와 관계없이 중경비처우급에 편입하고 있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준범의식 고취를 통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상담 등을 통한 성격결함을 제거하고 자발적 자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독거실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석방은 불허된다.

[표] 경비등급별 수형자 구성

연도	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제외·유예
2011	29,386	1,892	9,334	15,594	1,710	856
2012	29,452	2,086	10,208	14,763	1,916	479
2013	29,694	2,478	10,067	14,532	2,039	578
2014	31,237	2,878	10,442	14,864	2,423	630
2015	33,244	3,233	11,163	15,366	2,705	777
2016	34,776	3,363	12,164	15,642	2,765	842
2017	34,622	3,619	11,923	15,569	2,770	741
2018	32,263	3,600	11,316	14,237	2,650	460
2019	33,242	3,968	11,736	14,159	2,789	590
2020	33,701	4,258	11,833	13,877	2,845	888

※ 2021 교정통계연보 71쪽

경비등급 중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형자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② 「형집행법」 제194조²⁰⁾ 기준 ‘엄중관리 대상자’

18) 중경비처우급 전담교도소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일하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일부교도소에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김선태, 같은 논문, 211쪽.

2) 법무부 훈령의 기준

법무부 훈령에서도 중범죄자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살인, 성폭력, 방화, 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하여 ‘고위험군 수용자’로 분류하고 특별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는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계호와 처우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도 중범죄자의 처우에 필요한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분류센터 운영지침」 ‘고위험군 수용자’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에서는 살인 관련 범죄, 성폭력 관련 범죄, 방화 관련 범죄, 폭력 관련 범죄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정밀 분류심사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분류센터 심사대상자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죄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분류센터 대상자 선정관련 구체적 죄명(제12조 관련)

범죄유형	구체적 죄명
살인관련범죄	▶ 일체의 살인 관련 범죄 ※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제외
성폭력관련 범죄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 유인, 인신매매 ※ 제외 범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보내거나 촬영하는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 성매매광고, 성매매, 성매매알선 및 방조, 성매매강요(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강요는 제외)
방화관련범죄	▶ 일체의 방화 관련 범죄 ※ 업무상실화, 중실화, 실화 등 과실범은 제외
폭력관련범죄	▶ 일체의 상해와 폭행 관련 범죄 ▶ 일체의 강도 관련 범죄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폭력, 상해 관련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5, 10의 위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아동복지법위반

2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
2. 마약류수용자
3. 관심대상수용자

범죄유형	구체적 죄명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등 과실범은 제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관련범죄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이외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죄

그 외에도 분류센터장은 제1항 외에 정밀 분류심사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취 및 유인, 인신매매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분류센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절도, 사기 등 제1항 외의 죄명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범죄전력 등을 검토하여 고위험군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7조는 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관리수준(RM 등급, Risk Management)을 아래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1) 1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사람으로 교정시설의 통상적인 처우 · 관리가 가능한 수준
- 2) 2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보통으로 평가된 사람으로 교정시설의 통상적인 처우 · 관리가 가능하고, 석방 시 필요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
- 3) 3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람으로 석방 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범위험 관리가 필요한 수준
- 4) 4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특별관리 대상으로 석방 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원조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

②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

한편 다른 수형자와의 접촉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독거수용해야 하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71조의2에 따라 이입된 수형자(이하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가 있다.

중경비시설이란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엄중히 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중경비시설은 상습적으로 징벌을 받는 수형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수형자를 수용하며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있다. 이 시설은 외부인의 정문출입, 주벽경비, 거실내 수용자 보호수준, 거실과 수용동 등에 대한 물적 계호가 일반경비시설보다 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정기관을 지정하여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다. 각국 모델과의 비교

이와 같은 개정 「형집행법」의 모델은 미국 분류심사제도이다. 미국의 분류심사제도와 경비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처우를 살펴보면, 교정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형자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미니멈, 미디엄, 맥시멈, 슈퍼맥스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나누어 수용하고 접견과 대인접촉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개방경비급 미니멈 교도소는 도주의 위험성과 계호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수형자가 수감되고, 도주의 위험성과 계호정도에 따라 완화경비급 미디엄 교도소, 일반경비급 맥시멈 교도소, 중경비급 슈퍼맥스 교도소로 분류된다.²¹⁾ 미국의 슈퍼맥스 교도소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수형자, 탈출의 경력이 있는 수형자들을 수용하는 구금레벨이 가장 높은 교도소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슈퍼맥스 교도소는 우리의 중경비시설보다 강력하게 수형자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하루 22시간에서 23시간 독방에 감금시키는 등 물리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자 한다.²²⁾ 그런데 실제 매뉴얼을 살펴보면 각 경비등급별로 수형자 처우와 시행하는 프로그램 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²³⁾

이와 달리 교정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시설의 차별뿐만 아니라 처우의 차별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개방시설과 완화경비시설에 해당하는 C급과 F급 교도소의 설비는 최소한의 보안을 갖춘 반면, 중경비시설에 해당하는 A등급 교도소는 수형자의 수와 비슷한 교직원 수, 제한된 전화통화, 외부와의 접촉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²⁴⁾ 수감자 전체 인구의 9%가 이러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명백히 도주 등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다.²⁵⁾

III.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

1.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현상 일반

가. 장기수용자에 대한 처우

2020년 기준 전체 수형자 가운데 사형확정자, 무기수형자, 2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수형자와 20년 이상 장기수형자의 50.4%(사형확정자의 56%, 무기수형자의 50%)가 15년 이상 장기간 수용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수용생활의 권태감과 긴장감이 이완되어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

21)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66쪽.

22)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69-71쪽.

23)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10쪽.

24)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같은 쪽.

25)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131쪽.

아질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수용자의 41.5%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육체적인 능력 저하로 인한 우울감, 자살충동 등 심리적인 취약점이 나타남으로 인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처우는 먼저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접견실, 가족만남의 날을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 및 직업훈련 직종 선정시 장기수형자에 대해 배려하고 일정기간 학습을 요하는 직업훈련이나 학과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수형자에 대하여는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인성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점검하고 있다. 무기수형자의 경우에는 20년 시점과 이후 매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 현행화를 하고 있다.²⁶⁾

나.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계

1)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실태

기존 강의식 교육으로는 효과적인 교장·교화에 한계가 있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성폭행, 마약류, 알코올, 도박, 도벽, 정신질환, 동기없는 범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²⁷⁾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6조에는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237호, 2019. 9. 4.) 제21조에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관련 범죄, 상품폭력·도박이나 그 밖의 행위중독관련 범죄, 동기없는 범죄, 정신질환범죄, 기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그 밖의 수형자의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하여 치료와 교육을 명하는 제도이다 이수명령제도가 현행 법체계에 도입된 것은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시부터이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

26)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161호, 2017. 8. 17.) 제47조 제1항 제2항

27) 교정연보, 160쪽

로그래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청소년 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에 이수명령을 집행하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항,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4항),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성폭력심리치료프로그램의 대상은 성폭력범죄 수형자 및 성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하고 있으며, 과정은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심리치료업무지침」 제33조).

【표】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구분		기본	집중	심화
구분	재범위험성	저	중	고
	이수명령시간	100시간 이하	101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201시간 이상
치료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치료기관		모든 교정기관	집중과정 기관	심리치료센터

2)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부재

10년 이상 장기수형된 중범죄자의 경우 이들의 수감경험은 다른 수형자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류한 후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자유박탈을 경험하면 교도소에서의 수감은 ‘인생에서의 재앙’에 해당할 만큼 많은 것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유지하던 프라이버시의 부족으로 많이 불편하고 괴로워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유박탈로 인하여 가족과 단절될 것에 대한 우려로 우울증이 많이 발병한다. 따라서 자유박탈 초기에는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에서 배제·후퇴하였다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오랜 수감생활을 겪은 장기수는 외부세계와 단절되고 형기가 장기간으로 오랜 수형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출소후 사회는 출소전 사회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또한 출소 이후 사회 재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출소 이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알선 등이 필요하다.²⁸⁾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중범죄자에 대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향후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기가 장기간이므로 일정기간마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처우와 지도가 필요하며,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로 인한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 출소전 사

28) 강은영·권수진·원해욱,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39-140쪽.

회적응을 위한 지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다. 경비처우의 실효성 문제와 개별처우의 원칙

경비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처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용시설에 배정되어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 등으로 수용된다.²⁹⁾ 그런데 국내의 수용실태와 처우실태를 보면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각 교정시설을 분류하고 수용하는 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차등적, 단계적 처우는 아직 미진한 단계이며 개별처우라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³⁰⁾ 분류심사 초기에 경비등급별로 수용하여도 교정시설 자체가 차등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시설 간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개별적 처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³¹⁾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그 정책상 교화·개선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하고 격리 구금을 통하여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데 도주를 차단하고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나 이와 같은 제한이 원만한 수용생활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형자의 격리 구금을 통한 대인접촉의 최소화는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³²⁾ 경비처우등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비처우등급 상의 구분과 수용형태에만 치중하는 것은 차등화·개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행형이념 관점에서 보건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경비처우등급상의 구분은 수용관리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수형자를 분류하고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축된 제도는 미니멈, 미디엄, 맥시멈, 슈퍼맥스와 같은 경비체계를 구축한 미국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고 교정 실정과 이념에 맞게 변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분류체계 역시 강력범의 도주 가능성, 위험성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통제를 강화하고자 할 뿐 단계에 맞는 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분류체계 역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분류체계는 수형기간에 따른 단계별 접근과 다양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정실무에서도 분류처우를 시행하면서 수형기간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엄중관리대상자’ 또는 ‘고위험군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는데 보통 장기형 수형자들이 이와 같은 대상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경비처우의 대상이 되나 장기수형자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립하거나 이에 기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복귀능력을 상실한 장기수형자들이 사회 복귀에 대비하고자,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을 해소하고자 이들에 대한 개별처우의 원칙을 실현하여야 할 필요하고 있다.

개별처우는 반드시 수형자 개개인을 단독으로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정처우는 수형자가 수용될 교정시설의 인적·물적 상태로 볼 때 집단처우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

29) 김선태, 같은 논문, 215쪽.

30)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22쪽.

31) 김선태, 같은 논문, 221쪽.

32) 김선태, 같은 논문, 220쪽.

고 여기서 말하는 개별처우는 대부분 유사성이 높은 것을 하나의 집단으로 처우할 경우에 있어서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집단 처우와 개별처우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를 ‘특성별 그룹’으로 나누어 그 차이에 대한 처우를 행함으로서 개별처우의 실효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³³⁾

2. 중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가. 중범죄자의 구분의 통일된 기준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범죄자에 대한 처우 기준은 법령에 따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엄중관리대상자’, ‘고위험군수용자’,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 등으로 명명되며 처우의 성격에 따라 중복되거나 일부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 처우를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혼동을 초래하여 계호 공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문제는 감시와 처벌, 사회안전이라는 큰 틀 속에 교정·교화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영미법계 교정체계와 교정·교화에 중심을 두고 감시와 처벌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대륙법계 교정체계가 혼재된 우리 교정체계의 혼란에서 비롯한 점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교도관의 역할에 있어 감시와 형의 집행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자 혹은 교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교정·교화에 필요한 인력은 전문가 집단을 따로 선발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즉, 감시와 처벌에 무게 중심을 두고 교정·교화를 가미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공무원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확실한 중심철학이 없는 혼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교도관에게는 역할 갈등을, 수용자에게는 관계설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충돌을 경험한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수용자 계호(운동근무, 동행, 수용동 지원근무 등) 업무와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중적 지위에 노출되어 있다. 오늘은 수용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일은 질서위반을 지적해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직원은 역할 갈등을 일으키고 수용자는 직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 갈등은 수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상담자를 적법성을 감시하거나 인권진정에 참여함으로써 치료활동을 크게 약화시킨다.

33) 강영철, 같은 논문, 40쪽.

[표]

	교도관과 상담직원의 역할구분	교도관	치료 및 상담 직원	문제점
영미법계	강함	합법성 감시 (인권보호)	합목적성 감시 (치료효과 증진)	
대륙법계	약함	합법성 통제 < 합목적성 통제		
우리나라	거의 없음 순환보직제 ³⁴⁾	합법성 통제 > 합목적성 통제		·치료자의 역할갈등 ·치료자의 역할 수행곤란

나. 중범죄자의 시설 수용 상의 문제

1) 독거수용실 부족

우리나라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³⁵⁾으로 하고 있다. 소장은 수용·처우 또는 교육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고 혼거수용의 경우 개선급·처우급, 처우등급, 연령 및 죄명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하여 수용한다고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독거수용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 테켈 교도소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개인공간의 넓이를 화장실을 제외하고 20제곱미터(7평)이상으로 건설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보호감호 대상자의 개인공간이 15제곱미터(5평)이상이다.³⁶⁾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시설 내 독거 수용거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계지침은 우선 독거수용자를 선정하여 독거수용 거실을 운용한다. 그런데 독거수용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독거수용의 우선적인 선정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자의 독거수용 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범죄자가 일반 수용자와 섞이면서 혼거실 내 폭행사건이나 갈취 등 다른 교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발생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16조에서 제422조까지의 내용은 중경비수용자만

34) 관련규정해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6조 (상담) 참조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계호근무 직원에게 엄중관리대상자(마약, 조직, 관심)에 대한 전문상담을 맡기고, 동시에 고도의 합법성 감시를 하고 있어 역할 갈등 및 직무 수행에 곤란을 경험하게 됨.

35) 「형집행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36) 정진수·송재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연구(Ⅰ)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61쪽.

을 수용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은 잘 숙지하고 있어 직원폭행 및 다른 수용자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경처우급 수용자를 수용하여 관리하는 일반경비처우급(S3급) 시설이나 완화경비처우급(S2급) 시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중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일반수용자와 섞여 생활하거나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규정에 맞는 처우를 별도로 시행하기 곤란하고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의 곤란

중범죄 수용자 중 처우곤란자의 경우 이송지침³⁷⁾에 의하여 6개월에 한 번씩 이송신청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소위 처우곤란자를 6개월에 한번씩 이송시키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중범죄 수용자의 교정·교화는 포기한 듯한 이러한 처우형태로 처우 곤란자의 관리는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다. 교정·교화, 작업 프로그램의 부재

1) 프로그램 부재 일반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관련 범죄, 상습폭력·도박이나 그 밖의 행위중독관련 범죄, 동기없는 범죄, 정신질환범죄, 기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그 밖의 수형자의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상 각종 범죄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重)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중범죄자의 경우 상당수의 수형자는 수용시설 입소 초기 분류심사를 통해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분류되며,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교화프로그램 참여나 작업참여에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중경비급에 해당하는 교도수형자들의 교화·프로그램의 참여의 제한은 교정시설 내 원만한 수용생활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감소한다고 보는 연구는 이와 배치된다.³⁸⁾ 수형자들의 폭력성이 저하되고 교정시설 내 수용에 따른 중압감과 수용에 따른 긴장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7)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68조(개별처우자 등 이송)

38)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32쪽.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제5조

별표 1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 사회적 처우 기준

구분 \ 등급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일반귀휴	허가 (연중 20일)	허가 (연중 10일 내외)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사회견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봉사활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날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집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외부종교 행사참석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외부연극,문화 공연 관람	필요시 허가	필요시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2) 중범죄 여자수형자의 처우

중범죄 여자수형자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수형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교육, 작업 등의 실시에 있어서 남자수형자에 비해 기회나 시설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자 수형자의 경우 시설이 적어 대부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데, 가족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고 여성수형자를 거주지 주민으로부터 격리시켜 시설 직원이 수형자의 사회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조정을 꾀하는데 현저한 곤란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시설의 수가 적을 때 분류처우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남자는 시설에 의해 연령, 형기, 교정 난이도 등 여러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지만 여자수형자의 경우 각자에 적합한 시설과 처우를 부여하기 어렵고 시설과 함께 특수·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⁹⁾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의 노력은 남자수형자를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자수형자에 대한 각종 처우는 예산, 시설, 인력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범죄 여자수형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중범죄 남자수형자와 동등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처우프로그램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39) 박영규, “여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소식』 제39권 제39호, 한국교정학회, 2008, 94쪽.

[표] 여자수형자의 형명·형기별 인원

구분	징역							무기
	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2011	1,501	349	571	268	154	98	18	43
2012	1,566	350	583	306	173	93	18	43
2013	1,608	304	608	362	181	85	23	45
2014	1,779	352	681	387	198	93	23	45
2015	1,975	408	751	393	251	103	24	45
2016	2,191	477	858	421	259	106	23	47
2017	2,258	461	851	464	284	122	27	49
2018	2,335	436	900	488	297	133	31	50
2019	2,307	422	879	457	323	142	34	50
2020	2,334	322	946	491	334	154	38	49

라. 범죄예방 및 위험성 평가활용의 한계

1) 석방 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부족

중범죄자가 가석방에서 제외되거나 중간처우 시설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형기를 마친 경우 아무런 완충기간 없이 사회복귀가 이루어져 사회 부적응과 재범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미흡

2016년 「분류센터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전국 지방교정청 별로 4개 분류센터가 만들어지고, 징역 2년 이상의 특정 중범죄자에 대하여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수용관리 및 처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나 위험 수준 평가 후 결과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은 판결전 조사단계뿐만아니라 교정시설에서도 위험성평가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많이 활용되고 있다. 판결전 조사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 이외의 많은 수의 민간전문가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외 죄질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하여 감정을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들 의견을 제출할 때 그에 대한 근거로서 평가도구들의 활용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교정시설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치료에의 적합성, 치료의 효과평가, 재범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⁴⁰⁾

40) 이수정,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2쪽.

Ⅳ.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과제와 대안

1. 중범죄자 구분의 통합적 기준제시

중범죄자에 대한 통합적 기준이 없어 누구를 중범죄자로 관리해야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S4급)와 엄중관리대상자, 고위험군 수용자, 인성검사 특이자, 일일중점 관찰대상자 등 유사개념을 합집합으로 포괄해 중범죄자로 관리하는 경우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집중처우가 곤란해지고, 교집합으로 중범죄자를 관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관리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교정시설에서 중범죄자 관리에 대한 통합적 용어 및 범위를 선정하여 관리해 간다면 보다 효율적이 관리 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범죄자의 수용 시설 개선

가. 독거수용실 및 전담교정시설 확충

우리나라 유일의 중경비처우급 교도소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전 수용거실을 독거실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중범죄자를 전담 수용하고 폭행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전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시설교도소 및 일반 교도소에도 독거실 비중을 늘려가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방지대책 마련

폭력성이 짙은 중범죄자를 일반경비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교도소에 수용함으로써 사고위험을 높이고 다른 수용자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역별 중경비처우급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일한 중경비처우급 전담 교도소인데 이를 교정청별로 하나씩 신설하고 전담처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교정사고 예방과 중범죄자의 교화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 전담 처우 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중범죄 중 처우곤란자를 6개월마다 이송하는 것은 교정교화의 수용관리에는 수월한 측면이 있겠으나 수용자의 재사회화에는 전혀 이롭지 않다. 중경비처우급 교정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중범죄 수형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교정·교화 할 전담 교정시설의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일한 전담교정시설이다

3. 중범죄자를 교정·교화하고 치료할 프로그램 개발

중범죄자 대부분의 경우 높은 교정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교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대안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현행 처우프로그램에서 보다 치료적 개입을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정심리학 관점에서는 범죄자 내부에 재범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나 정서, 인지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이 중요하고, 범죄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 유발요인을 안다면 스스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⁴¹⁾ 범죄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재범유발요인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적 개입을 넓혀야 하며 특정범죄군을 넘어 여러 하위집단에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6조와 「심리치료업무지침」의 규정내용으로 현재에도 중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형기 내 교정시설 내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사회내 전문가와의 참여를 통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교정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기없는 범죄 심리치료프로그램은 10명 내외의 치료인원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며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치료전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심리치료센터와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⁴²⁾ 요컨대, 심리치료를 기반으로 한 중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범죄성을 순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로 일본은 수형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배양하도록 하고 또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생활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⁴³⁾ 형사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개선 지도 중에는 ‘피해자의 시점(視點)을 도입한 교육’이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 대상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를 범하여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사죄의식이 낮을 것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가해자인 수형자가 피해자나 그 유족의 심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사죄 등 성의를 가지도록 하는 마음을 가르기 위한 교육이다. 각 형사시설에서는 대상자에게 생명의 존엄성, 죄의 무거움, 피해자의 실정, 사죄나 배상에 대한 책임, 구체적인 사죄방법의 생각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1) 윤정숙·김재현·박은영,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16쪽.

42) 교정본부, 교정실무, 2020년, 704쪽.

43) 일본 형사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9월 23일, 482쪽~490쪽 참조.

4.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의 적극 활용

가. 출소 후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입소시부터 성폭력과 아동학대 이수명령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프로그램의 진행과 검사, 집행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수형자의 경우 수형생활의 전 과정에 거쳐 수형기간별로 이들을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범죄자의 등록, 검사, 치료프로그램의 시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의 형기 동안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범죄자의 경우 가석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석방 없이 출소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적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완충기간 없이 사회복귀가 이루어진다. 완충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형기를 높이고 가석방 심사와 가석방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출소 후 관리방안 마련

중범죄자는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한 기간이 길고 제한된 공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부모는 나이가 들어 생활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의 해체로 중범죄자가 출소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형생활기간 중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연착륙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범죄자에게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중(重)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연착륙을 위한 환경과 필요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범죄자가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는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은 물론 부모 등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연계는 특성화된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된 시간과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체계는 출소를 준비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물론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6년 4개 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처음 만들어져 징역 2이상의 특정 중범죄자에 대하여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수용관리 및 처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분류심사 결과에 대한 처우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출소 후 보호관찰 및 경찰 등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처우 그리고 경찰의 개입가능성까지 염두 해 둔 연계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은영 · 권수진 · 원해욱,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 교정본부, 『교정실무』, 2020년
-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 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 김지영 · 박선영 · 윤창식,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금융명,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 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 윤정숙 · 김재현 · 박은영,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이수정,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정진수 · 승재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연구(Ⅰ)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정진수 · 유창식,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최영신 · 이승호 · 윤옥경 · 금융명,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연구(Ⅲ) -교정 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유병철,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영국·미국의 범죄자관리 모델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제2주제

영미의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 경향과 시사점

이유경 박사
(명지대 객원교수)



영미의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 경향과 시사점

-형집행 종료 후 성인대상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이유경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I.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관찰

1. 미국의 Sex Offender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2. 스코틀랜드의 Order of Lifelong Restriction

3. 한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관찰

1.1. 미국의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Colorado주의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 1998년에 도입.
- 통째모형을 지향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치료·감독 실시
- 취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전제로 형집행 종료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와 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
- 보호관찰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범위 (§16-11.7-102(2)(a))
 -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
- 집중감독 실시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 / 집행은 Sex Offender Management Board(SOMB)
 - 재범위험성 등 평가도구(Adult Standards and Guidelines 등) 개발 및 평가 실시, 성범죄자(소년사범 포함)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피해자 보호 11개 전담 소위원회
 - 교정당국, 교정시설관리자, 법무부, 경찰, 국선변호인협회, 검찰, 보건당국, 범죄자 심리상담 전문가, 피해자 지원단체, 교육당국, 거짓말탐지 임상 전문가, 소년정책당국, 안전행정당국 등 25명으로 구성
- 폭력이 동반/상습범/가해자가 18세 이상/피해자가 12세 이하/가해자가 피해자보다 10살 이상 연상 → 집행유예 불가

- 평가도구(SOMB Standards and Guidelines): 1996년 최초 발간 이래 SOMB에서 매년 수정
- 성범죄의 성격 자체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전제
 - 성범죄자에 특화된 평가체제가 필요함 (선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 성범죄자에게는 장기간의 강도 높은 관리가 효율적임
 - 성범죄자 개별 평가가 고려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자보다 높은 재범률 있다고 전제
 - 성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간주
- Standards and Guidelines의 취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것임 (이익교량)
- 치료 및 감독은 형사제재가 아니라 예방적·완화적 조치
- Community Supervision Team(CST) for adults나 소년사범을 위한 융합조직(MDT)의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
 - 소년사범을 위한 Standards and Guidelines은 별도로 발간
 - CST와 MDT는 보호관찰 담당자, 치료담당자, 피해자 대표, 거짓말 탐지 담당자 및 비상근 전문가로 구성
- Sexually Violent Predators(SVPs) 분류
 - 범행 당시 18세 이상이거나 재판 시 18세에 이른 경우
 - 성범죄, 불법적인 성관련 계약, 아동성범죄, 보호의무 있는 자의 아동성범죄 (미수, 교사, 모의 포함)
 - 위험성 평가도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이 인정되거나 검사 때마다 상당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
 -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 가능. 단, 2급 중범죄의 경우 강력한 권고
 - 필수적 성범죄자 등록, 주소지 변경 시마다 지역사회 통지(완전 공개),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최고 20년 등록 유지
 - 위 통지조치에 대하여 SVPs는 이익제기 불가 (단, 소년범은 보호관찰 종료시 통지조치 종료/ 이익제기 가능)

▪ Sex Offender Lifetime Supervision Act

- 평균 450명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 §18-1.3-1004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하한 또는 중간 이상부터 사망 시까지 부정기형 선고해야 함 (상습범 하한은 법정 하한의 3배).
Ex) 4급 중범죄(10년~사망시), 2급 또는 3급 중범죄(20년~사망시)
- 가석방 기간도 위와 동일
- 모든 가석방자는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대상
 - 전자장치 명령 필수 (가석방위원회)
 - 지역 가석방 담당자와의 매일 면담
 - 외출제한/야간외출금지/자녀면회제한
 - 가석방 담당자의 거주지 방문(사전고지 없는)/ 직장방문 및 모니터링
 - 약물 및 음주 검사/ 치료프로그램 참석 및 모니터링
 - 거짓말탐지 검사
 - 성범죄자 등록
- 치료 프로그램 및 성범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민간 단체가 지원하고 SOMB가 심사하여 결정
- 프로그램 수행성과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석방 담당자가 가석방위원회에 가석방 기간 축소 또는 완화된 감독 프로그램 의견 개진 / 완화된 프로그램 수행 중 재범의 위험성이 발견되는 경우 가석방 담당자는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을 다시 시행할 것을 의견개진 할 수 있음
- 본 가석방 기간 종료 후 가석방 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가석방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 / 유지결정을 하는 경우, 3년 마다 다시 심사

▪ 일반 보호관찰과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의 차이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위험성
- 일반 보호관찰의 경우 담당자와의 면접이 주로 월에 1회 (전화 등 가능) / ISP는 주당 수회의 대면면접
-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은 범죄자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가택연금의 성격, 처벌상태의 유지 및 재할 / 일반 보호관찰의 경우 일종의 생활기준 제시 및 경고의 의미
- 이동 및 행동의 자유 제한

1.2. 스코틀랜드 Order for lifelong Restriction

- Serious Violent and Sexual Offender 대상
- 2006년 도입
- 행위책임이 아닌 행위자가 보인 위험성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
-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판사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Risk Assessment Order를 내리고 평가자를 지정 → Risk Assessment Report를 90일 이내 작성 → 판사가 보고서를 근거로 order for lifelong restriction 결정
- 선고의 근거가 되는 위험성 기준은 형법에 명시 (Sec.210E Criminal Justice Act 2003)
- OLR 선고 시, 최소 복역기간 명시 / 이 기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가능
- 무기징역 / 가석방 시 사망 시까지 강화된 intensive supervision 대상
 - 감독과 치료, 모니터링 병행
 - 전자장치 장착
 - 가석방위원회의 관할

1.3. 한국의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대상
 - 성범죄로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성범죄
 -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경력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
 - 성범죄 2회 이상으로 습벽이 인정되는 때
 -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
- 심사시기: 재판시
- 부착기간: 법정형에 따라 결정
 - 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30년
 - 법정형 하한 3년 이상: 3년~20년
 - 법정형 하한 3년 미만: 1년~10년
- 부가조건
 - 외출제한/(피해자, 아동) 접근금지/주거지역 제한
 - 치료 프로그램 이수
 -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 부착기간 연장: 1년의 범위 내

집중보호관찰

- 분류기준 (KPRAI-R): 결혼·가족관계, 경제·주거상태, 직장, 대인관계, 음주·약물상태, 정신건강, 범죄경력 등
- 분류절차
 - 보호관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 실시
 -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질문지(초기면담 질문지), 참고자료(범죄경력, 조사서 현황, 수용생활 기록 등) 출장을 통해 파악한 정보 및 심층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처우회의를 통해 분류 실시
- 분류등급
- 집중
 - 재범위험성 평가 상위 5% 이내 (필수)
 - 상위 5~20% 대상자 중 보호관찰 기간 재범경력, 주거지 등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 등 (재량)
 - 주요
 - 대면 지도감독 월 2회 이상
- 주요
 - 상위 20% 이내 중 집중 대상자 제외한 모든 대상자 (필수)
 - 상위 20%~60% 중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 (재량)
 - 대면 지도감독 월 1.5회 이상
- 일반
 - 집중 및 주요대상자, 분류등급 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

- 성폭력 사범은 주요 등급 이상으로 지정(필수)
- 전담보호관찰제 운영 (57개 기관 중 12개 기관에서 시행 중)
-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른 면담
- 외부상담전문가와 1:1 결연 후 상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폭법	4.9	4.1	4.8	5.2	4.0	4.5	4.1
성충동약물치료법	0	0	0	0	0	0	0
형법	5.2	5.5	6.0	5.8	5.2	5.0	4.8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동종재범률	2.03%	2.00%	2.00%	2.17%	2.53%	1.70%	1.27%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감독 기간 내 동종재범 현황>

II. 집중보호관찰 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문헌연구)

1. 미국의 최근 ISP 실효성
연구

2. 우리나라 집중보호관찰 연
구

II.1. 미국의 최근 ISP 실효성 연구

외부적 제재 중심 ISP의 실효성 논란

- ISP 그룹의 재범률과 비교그룹 간 감독 기간 내 재체포 비율 odd ratio= .93, $p = .72$ 로 큰 차이 없음 (Grill & Hyatt)
- 담당자의 담당케이스 수가 감소하여도 감독 기간 내 재체포 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 (Latessa et al., 1998)
- 제재 중심의 ISP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Sherman et al., 1997)

회복적 성격의 ISP의 실효성

-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New Jersey의 ISP, 재범률 28% 감소, 가석방 취소율 21% 감소, 단순규정위반 7% 감소 (Gendreau & Paparozzi, 2005)
-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에서 담당자의 담당케이스가 감소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재범가능성이 25.5% 감소 (Jalbert et al., 2010)

필라델피아 ISP 실효성 평가 연구 (Hyatt & Barnes, 2017)

- 2010년 5월 ~ 2011년 4월
- 449개의 ISP Treatment 그룹과 385개의 통제 그룹
- ISP Treatment 그룹에는 2년 내 중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만 포함 / 이전에 ISP를 받은 적 있는 사람은 제외
- 평균연령 29세 / 이전 수감경력 각각 94%, 96%

Table 3. Fidelity to Treatment Protocol.

Treatment event	ISP	Control	p
	M (SD)	M (SD)	
Scheduled office meetings	21.47 (15.03)	9.09 (5.62)	.000
Successful office meetings	18.67 (13.878)	7.35 (5.62)	.000
Scheduled home visits	8.82 (8.119)	0.12 (0.753)	.000
Successful home visits	5.32 (6.072)	0.08 (0.634)	.000
Scheduled phone contacts	8.45 (9.478)	4.08 (6.482)	.000
Successful phone contacts	5.5 (5.908)	2.69 (4.07)	.000
Drug tests administered	6.61 (5.849)	0.85 (2.063)	.000

<ISP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현저하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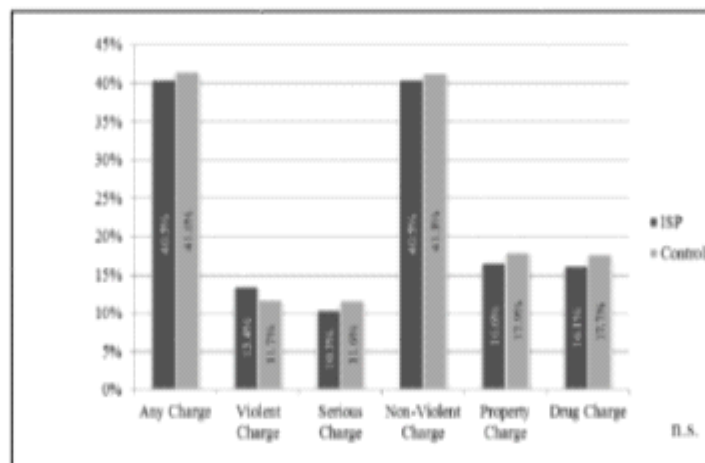


Figure 2. Prevalence of offending within 12 months.

<12개월 내 재범률에 대하여 ISP 그룹과 통제 그룹 간에 모든 범죄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점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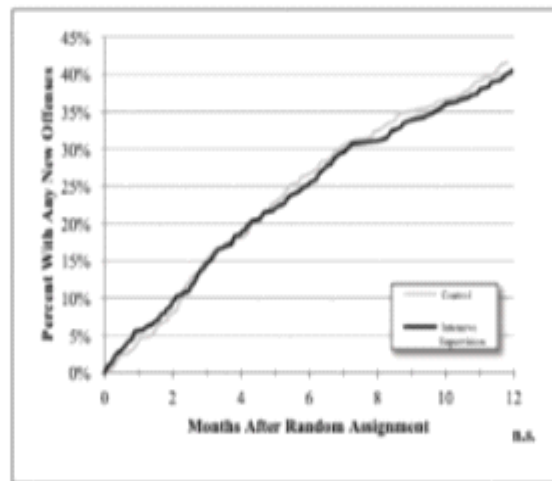


Figure 4. Time to failure, all offenses.

재범이 발생하는 시기에 있어서 ISP 그룹과 통제 그룹 간에 미미한 차이

Table 5. Recorded Types for Violation Hearings and Prevalence of Justifications for Violation Hearings.

	ISP	Control	p
Type of violation			
Direct violation(s)	5.30%	4.40%	.618
Technical violation	29.30%	12.40%	.000
No reason given	1.10%	0.05%	.333
Justification for violation (prevalence)			
Drug test results	12.98%	1.30%	.000
Employment	0.22%	0.26%	.916
Failure to report	7.61%	4.94%	.111
Unpaid fines	3.58%	1.82%	.114
Misc. rules	4.25%	1.30%	.008
New arrest	14.32%	7.79%	.002
Treatment	1.82%	4.25%	.039

- 단순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ISP 그룹이 더 높은 수치를 보임
- 이에 따라 가석방/집행유예 취소율 및 재수감률도 ISP 그룹이 현저히 높음
- 치료중심모델의 도입 필요성

II.2. 우리나라 집중보호관찰 연구 (문헌연구)

- 집중보호관찰에 대한 연구의 부족
- 집중보호관찰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족

<김병배(2019)>

- 2018년 2월~ 4월 (3개월)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674명 / 통제집단 3130명

	집중보호관찰 집단	통제집단
재범률	27%	23.5%

	집중보호관찰 집단	통제집단
준수사항 위반률	8.6%	7.8%

- 집중보호관찰 전담 보호관찰관 교육훈련 체계의 정비
- 사례수 감축
- 담당 보호관찰관과 대상자 간의 관계의 질이 중요
- 제재 중심 보호관찰의 실효성 문제

III. 보호관찰의 다변화, 개별화

1. 치료중심적 집중보호관찰

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개별화

3. 프로그램의 다양화

III.1. 치료중심적 집중보호관찰

New York 주의 Strict and Intensive Supervision and Treatment

- Sex Offender Management and Treatment Act(SOMTA) : Mental Health Law §§10.01 ~ 10.17.
- 2007년부터 시행 (2021.8. 까지 총517건)
- 취지: 성범죄 재범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증상을 가진 범죄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 (§10.01)
- 대상: 수감 중 또는 가석방, 집행유예 및 형종료 후 성범죄자 / 초범자 포함
-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 Office of Mental Health (OMH)의 통제형 치료시설에 구금 / 위험성이 그보다 낮은 경우 석방 후 Strict and Intensive Supervision and Treatment 대상.
- 수단: 적절한 선고형, 형집행 종료 후 장기 감독, 치료
- 성격: 형사제도가 아닌 확장된 의미의 치료감호 (civil commitment)
- 기준: 치료의 필요성 + 재범위험성
- Office of Mental Health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 내용
 - 전자장치 부착
 - 거짓말 탐지 실시
 - 주거지 지정
 - 피해자 및 관련자 접촉 금지
 - 치료프로그램 참석 (OMH 관할)
- 위반 시 제재
 - 상습적·증대한 위반의 경우 임시 구금되어 정신감정명령이 내려짐 (5일 이내)
- 이의제기
 - 대상자는 2년마다 처분변경 및 SIST Order 종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총 196건의 청구 중 140건이 인용되었음

Table 1: Crimes of Conviction for SOMTA-Qualifying Offenders	
Rape	41.2%
Sexual Abuse	21.2%
Criminal Sexual Act (Sodomy)	19.8%
Course of Sexual Conduct Against a Child	8.7%
Designated Felony ¹	9.1%

¹ See Appendix Table 1-A for a listing of qualifying sexual offenses and designated felonies.

III.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개별화

Less is More Act (NY)

- 2021년 9월 도입
- 주요내용
 - Earned Time Credits: 가석방, 조건부 석방, 행집행 종료 후 감독을 받는 자는 30일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간이 30일 축소되며,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credit이 무효화되나 위반일로부터 31일이 되는 날부터 다시 기산 / 최대 2년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완화된 제재
 -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 담당자가 가석방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 즉각적인 감금 대신 48시간 이내 출석의무 부과/ 48시간 이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정되고 감금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고의로 이전 심리들에 출석하지 않았고 금전적 처분 등으로 출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비구금심리가 원칙

- 개별화된 제재
 - 한 두번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금되지 않음 (성범죄 예외 / 피해자 접촉 등 위반시 구금)
 - 1,2회(비구금), 3회(7일), 4회(14일), 5회 이상(30일)
 - 도주한 자는 1회(7일), 2회(15일), 3회 이상(30일)
 - 외출제한 위반, 벌금미납,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경찰과의 면담 등에 대해 미고지 → 구금되지 않음
- 보호처분 절차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
 - 비구금심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대상자가 구금된 경우, 준비기일은 5일 내에, 최종 심리는 30일 내에
 - 대상자가 구금되지 않은 경우, 최종심리는 45일 내에
 - 심리기간 동안 구금된 경우, 이 기간은 이후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구금일에 기산
 - 준수사항보다 심각한 위반이 인정된 경우 이의제기 가능
 - 심리는 구금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짐

- ✓ 보호관찰 중 재범을 징표하지 않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금되는 경우 사회복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단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 경감 / 감금으로 인한 비용 절약
- ✓ 보호관찰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필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그 밖에 부칙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선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III.3. 프로그램의 다양화

영국의 다양한 프로그램

- 인터넷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 인터넷상 성범죄 저지른 자 대상
 - 지역 민간단체와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협업
 - 보호관찰 담당관의 경우 관련 자격 및 교육 요건
 - 8~10명의 단체 세션과 1대1 세션 / 총 45시간
- 참여 프로그램
 - 치료 및 심리상담 외에 지역사회참여(교육) 프로그램 강화
 - 보호관찰 당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 도입
 - 성범죄자 자신의 범죄가 지역사회 및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피해자 대표 또는 관련단체 대표가 포함되어 그 피해에 대하여 논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